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94
----------	-------

발의연월일 : 2026. 5. 4.

발 의 자 : 박성훈 · 이인선 · 신성범
김기웅 · 정동만 · 박충권
이현승 · 고동진 · 김성원
박정하 · 서지영 · 김승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원유 90만 배럴이 국외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석유는 국가 경제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핵심 자원으로 석유 공급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피해는 일반 국민과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데, 최근 석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사용을 목적으로 비축한 원유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가자원 안보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유비축의무자 등은 비축유 반출 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시에 석유의 반출 제한 및 우선 확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

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비상시 비축유의 반출 통제 및 석유 확보 등을 통한 석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21조 및 제46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비축유의 반출) 공사 또는 석유비축의무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비축된 석유(이하 “비축유”라 한다)를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제1항제13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석유의 국외 반출 금지

14. 석유의 우선 확보

15.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반입

제46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축유를 반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축유 반출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축유를 반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이하 “석유정제업자등”이라 한다),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소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3. (생략)

②·③ (생략)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설>

-----.

1. ~ 12. (현행과 같음)

13. 석유의 국외 반출 금지

14. 석유의 우선 확보

15.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
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반입

16. (현행 제13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승
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축유를

5. ~ 11. (생 략)	<u>반출한 자</u> 5. ~ 11. (현행과 같음)
----------------	-----------------------------------